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3-27호

## 고용창출장려금(특별고용촉진장려금)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미준수를 이유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 반송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3. 3. 24.

## 서울지방고용노동청



- 1. 건 명: 고용창출장려금(특별고용촉진장려금)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
- 2. 근 거 :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 참고
- 4. 공고기간 : 2023. 3. 24. ~ 2023. 4. 7.(공고일로부터 15일간)
- 5. 의견제출안내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고용센터 기업지원과(10층)에 직접 방문, 우편발송 또는 팩스(02-6915-4018), 전자우편(lth0731@korea.kr)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6.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 이태희(Tel 02-2004-737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고용창출장려금(특별고용촉진장려금)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관련 공시송달 명단

(공고기간 : 2023. 3. 24. ~ 2023. 4. 7.)

연번	사업장명 (사업장관리번호)	주요내용	송달불능사유
1	주식회사제이엘*** (JL********) (37*-8*-0187*-0) 대표자명: 정**	<ul> <li>예정된 처분의 제목: 고용창출장려금(특별고용촉진장려금) 회수</li> <li>당사자 명칭: 주식회사제이엘***(대표자명: 정**)</li> <li>당사자 주소: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***, 지하*층(장안동)</li> <li>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</li> <li>고용창출장려금(특별고용촉진장려금) 대상자 '김**'의 감원방지기간인 2021.5.15.~2021.12.13.(채용일 2021.6.14.) 중에 '이**(77****)' 등 6인 이 2021.11.1. '[23]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'로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사실이 확인되어 감원방지기간을 미준수</li> <li>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</li> <li>처분 내용: 고용창출장려금(특별고용촉진장려금) 2,000,000원 회수</li> <li>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</li> <li>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</li> <li>* 상기 공고기간 내에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</li> <li>의견제출기관(주소): 서울지방고용노동청(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, 10층 기업지원과)</li> </ul>	폐문부재, 보관기간 경과 반송